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27
----------	---------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6. 1. 6.)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2017. 7. 13.)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관련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명 및 내용 변경(제명, 안 제1조)

나. 종전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다.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규정 변경(안 제8조제2항제2호, 제3호)
- 라.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마. 상위 법 근거조항 변경내역 반영 및 삭제(안 제21조)
- 바. 과태료 면제사유 규정 삭제(안 제22조제7항)
- 사.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10호, 제13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해당 없음)
 - 2)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 3) 가족정책과 : 성별영향평가(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조제1항 단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광류 광고물은”을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4미터”를 “3.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가로형 광고물”을 각각 “벽면 이용 광고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알릴 수 있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광류 광고물”을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제1호 중 “가로형”을 “벽면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제3호 중 “4미터”를 “3.5미터”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민협의회는”을 “주민협의회 위원은”으로, “자로 구성한다”를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한다.

제9조제4호 전단 중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를 “정비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 종료 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5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로, “광고산업”을 “옥외광고산업”으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를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을 “옥외광고·교통·환경·

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을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전단 중 “가로형 광고물과 세로형 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 선”을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전광류 광고물”을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 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8조제1항 중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기간,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

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적당”을 “곤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을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자에게”를 각각 “사람에게”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과 별지 제1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본다.

[별표 1]

옥외광고물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제20조 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1. 벽면 이용 간판·공연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미만 	5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6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7.0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8.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8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9.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2.0제곱미터 미만 	1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2.0제곱미터 이상 14.0제곱미터 미만 	1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4.0제곱미터 이상 16.0제곱미터 미만 	14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18.0제곱미터 미만 	16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8.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미만 	18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0제곱미터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200만원+2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미만 	5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6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8.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8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2.0제곱미터 미만 	1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 14.0제곱미터 미만 	1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4.0제곱미터 이상 16.0제곱미터 미만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18.0제곱미터 미만 	17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0제곱미터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200만원+2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3.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0.5제곱미터 미만 30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40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48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3.5제곱미터 미만 55만원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65만원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 4.5제곱미터 미만 80만원 ▪ 연면적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미만 110만원 ▪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130만원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미만 150만원 ▪ 연면적 8.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170만원 ▪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 20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200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더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40만원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미만 55만원 ▪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65만원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 연면적 8.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85만원 ▪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2.0제곱미터 미만 110만원 ▪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 14.0제곱미터 미만 130만원 ▪ 연면적 14.0제곱미터 이상 16.0제곱미터 미만 150만원 ▪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18.0제곱미터 미만 170만원 ▪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5.0제곱미터 미만 210만원 ▪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 230만원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5.0제곱미터 미만 24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5.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4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0제곱미터 ▪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p>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p> <p>300만원+5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p>
<p>5.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p>가. 선전탑 · 아치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p>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2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100만원 이하)</p>
<p>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p>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 초과 1개당 5만원 가산(100만원 이하)</p>
<p>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p>	
<p>가.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p>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2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100만원 이하)</p>
<p>나. 교통안내소</p>	<p>일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p>
<p>다.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p>	<p>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p>
<p>라. 영 제17조제1호 라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공공시설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p>25만원 30만원</p>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p>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p> <p>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p> <p>가. 비행선</p> <p>(1) 무인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p>(2) 유인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p>나. 그 밖의 교통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 연면적 5.0제곱미터 초과 <p>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p>	<p>35만원</p> <p>36만원+15.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50만원 미만)</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150만원</p> <p>150만원+1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500만원 이하)</p> <p>200만원</p> <p>200만원+1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500만원 이하)</p> <p>10만원</p> <p>20만원</p> <p>29만원</p> <p>35만원</p> <p>45만원</p> <p>50만원</p> <p>50만원+5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p>

※ 이행강제금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5] 이행강제금 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22조 관련)

종 류	교육 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 전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규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보수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규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사업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 포함) 	
기타교육	별도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 위	기 준	수 수 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일반 벽면 이용 간판	개	m ²	6제곱미터 이하	4,000	
			6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500	
	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의 4층 이상의 간 판(벽면 이용 간판)	개		5제곱미터 이하	5,000
		개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20,000
개		m ²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40,000 4,000	
2. 돌출간판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		1제곱미터 이하	10,000	
	개		1제곱미터 초과 3.5제곱미터 이하	20,000	
	개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30,000	
	개	m ²	1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2,000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 나. 내용변경	개		해당 광고물(벽면)에 준함	5,000	
	개				
4.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50,000	
	개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100,000	
	개		2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	200,000	
	개	m ²	4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4,000	
5. 지주 이용 간판	개		1제곱미터 이하	5,000	
	개		1제곱미터 초과 5제곱미터 이하	10,000	
	개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20,000	
	개	m ²	1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면적 1제곱미터당	2,000	
	개	m ²	4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4,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개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옥상간판에 준함	20,000	
	개				
	개				
	개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개	1제곱미터 이하	3,000
	m ²	1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20개 이하	15,000
		20개 초과 매20개까지 가산	10,000
다. 전자게시대 이용 광고	건		10,000
8.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5제곱미터 이하	15,000
	개	5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20,000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500,000
나. 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	대	1.5제곱미터 이하	2,000
	m ²	1.5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치광고물	개		20,000
12. 창문 이용 광고물	개		20,000
13. 현수막			
가. 벽면 이용 현수막	개	20제곱미터 이하	20,000
	m ²	2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00
나. 지주이용 현수막	개		2,000
다.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개		10,000
라. 현수막 게시시설		현수막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14. 벽보	매	20매 이하	5,000
		20매 초과 50매 이하	10,000
		50매 초과 매50매까지 가산	10,000
15. 전단	매	매1,000매까지	5,000
16. 입간판	개		4,000
17. 연립간판의 게시시설			
가. 신규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나. 기간연장, 변경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4분의 1	
18. 주소·성명 등 변경	건		5,000
19. 기타 광고물			
가. 차량탑재 영상광고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나.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		일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준함	
다. 깃발이용광고		지주 이용 현수막에 준함	
라. 기타종류의 광고물		가장 비슷한 광고물에 준함	

※ 수수료의 계산방법

- (1)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광고물의 테두리포함)은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 이하는 절사)하며, 산정된 금액의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입체형, 입체형 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 문자·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에는 계산된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백열등·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어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 (4)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5)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 (6) 연립형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 관련)

(단위 : 원)

광 고 물 등 의 종 류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옥상간판과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면적 1 제곱미터당	22,000 45,000 3,000
2. 돌출간판(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면적 1 제곱미터당	15,000 22,000 3,000
3.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면적 1 제곱미터당	15,000 22,000 1,500
4. 현수막게시시설	연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 8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80제곱미터 초과면적 1 제곱미터당	22,000 45,000 2,000
5. 그 밖의 광고물등	가장 비슷한 광고물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 (1)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수 료	관 련 법 규
신 규	업 소 당	15,000	법 제17조4호
변 경	업 소 당	7,500	법 제17조4호

※ 옥외광고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중 관할구역 안에서 영업장소재지 변경, 업소명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재교부를 신청한 때의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 기준(제25조 관련)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p>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를 제작·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0.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0.9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p>(2) 도로 외에 설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0.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0.9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p>나. 현수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3.0제곱미터 미만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p> <p>(2) 법 제5조제2항에 위반되는 광고내용</p>	<p>개당 14만원</p> <p>개당 24만원</p> <p>개당 34만원</p> <p>개당 44만원</p> <p>개당 54만원</p> <p>개당 64만원</p> <p>개당 85만원</p> <p>개당 110만원</p> <p>개당 129만원</p> <p>개당 130만원+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 가산한 금액 이하</p> <p>개당 10만원</p> <p>개당 12만원</p> <p>개당 14만원</p> <p>개당 29만원</p> <p>개당 39만원</p> <p>개당 49만원</p> <p>개당 59만원</p> <p>개당 69만원</p> <p>개당 79만원</p> <p>개당 80만원+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 가산한 금액 이하</p> <p>장당 13만원</p> <p>장당 33만원</p> <p>장당 78만원</p> <p>장당 80만원+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 가산한 금액 이하</p> <p>장당 5만원</p> <p>장당 5만원</p>

라. 전 단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5만원
(2) 법 제5조제2항에 위반되는 광고내용	장당 5만원
2. 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7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20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20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4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 관련)

①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경 사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생년 월일	④ 업 소 명	⑤ 전화 번호	⑥ 주 소	⑦ 옥외 광고사업 신고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 격	⑪ 표시 위치	⑫ 표시 기간	⑬ 광고 내용	⑭ 준공 일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화 번호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 검인 (제3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등 신고증명 검인			
광고내용 :			
표시위치 :			
표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현수막 : 가로 8~12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벽보·전단 : 가로 3~6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 ※ 다만, 압인·천공의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안전점검검사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종 류 (사용조명)	()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격(m)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⑬ 검 사 항 목		이면기재(당해 광고물등에 해당되는 항목을 검사함)		
⑭ 검 사 의 견 (총 합 의 견)				
⑮ 안 전 도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검사기관(단체, 법인) 인

검사원 직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안전점검 검사항목

검 사 항 목	검사내용 및 검사기준	검 사 결 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관 계 법 규	각종 법령 및 고시·명령 등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앵커볼트·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적정여부	
접합부위	기 초 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노화·균열·변형 등 적합성 여부 및 접합상태
	구 성 자 재	건물의 균열·파손·변형 등(하중·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여부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마모 등 확인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 상 접 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여부 등	
전 기 설 비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배선상태의 적정여부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의 사용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여부	
	폐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여부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여부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이후 또는 폭발·충격 등 인위적 충격을 받은 이후의 안전성 여부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등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안전점검 검사대장 (제17조제1항 관련)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 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 물등 의 규격	⑩ 검사 일자	⑪ 검사 구분	⑫ 검사 결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제 호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 자	①업 소 명 (단 체 명)				②검사지역
	③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법인번호)
	⑤주 소				
⑥영업장 소재지					⑦전 화 번 호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1.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2.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없 음
				3. 검사인력·시설·장비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제 호 <b style="color: blue;">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업 소 명 (단 체 명)		②검사지역
	③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법인번호)
	⑤주 소		
⑥영업장 소재지			⑦전 화 번 호
⑧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 서식]

안전점검사원증 (제16조제6항 관련)

- 규 격 : 가로 6.5센티미터, 세로 9센티미터
- 바탕색 : 연녹색
- 글자색 : 검정색

<앞 면>

안전점검사원증

사 진
(3.5×4.5)

(성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뒷 면>

No.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자격기간 : . . ~ . .)

상기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b style="color: blue;">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명서			
①교육 과정명			
②교육년월일		③교육시간	시간
수 료 자	④성 명	⑤생 년 월 일	
	⑥소 속 업체명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margin-top: 4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40px;">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또는 교육위탁 실시자)</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2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제22조제5항 관련)

①연번	②교육의 종류	③교육년월일	④교육시간	⑤성 명	⑥생년월일	⑦업체명	⑧비 고 (연락처)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u></p>	<p><u>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한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 ----- -----</p>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 5. (생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7. (생략)
 - ② (생략)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1면의 표시 면적이 20제곱미터

- -----

-----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
-----.
1. -----

----- 3.5미터 -----

 2. ~ 5. (현행과 같음)
 6. -----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1. (현행과 같음)
 2. -----

터 이상인 가로형 광고물(벽면에 도료로 표시하거나 고무류 등의 접착제를 이용하여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4층 이상 층·후면에 설치하는 가로형 광고물

----- 벽면 이용 광고물-----

----- 벽면 이용 광고물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② (생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일 미리 알릴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

----- 알려야 한다.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

-----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

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생략)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
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 6. (생략)

제8조(주민협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
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 다. (생략)

2. (생략)

3. 주민협회의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 7. (생략)

③·④ (생략)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
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물-----.

1. -----
벽면 이용-----

2. (현행과 같음)

3. -----
----- 3.5미터 --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협회의 운영) ① (현
행과 같음)

② -----

-----.

2. 주민협회 위원은 -----
----- 사람 중에서 영 제27
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
-----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
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 3. (생략)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생략)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4. ----- 정비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 종료 후 -----

-----.

5.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옥외광고산업 --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옥외광고사업자---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고시하는 -----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
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
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
계획·건축·국어·디자인·
조명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
문가

3. (생략)

② (생략)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 ③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
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
성·운영) ① -----

-----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
계획·건축·디자인·조명·
청소년 -----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
계획·건축·국어·디자인·
조명·청소년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심의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① ~ ③ (현행과 같
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

1. ----- 「서울특별시 옥외

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
정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가.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
상인 가로형 광고물과 세
로형 광고물. 이 경우 입체
형, 입체형 문자·도형, 특
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
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
각 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
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 사. (생략)

아.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
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
광류 광고물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
하 "시 조례"라 한다)-----

2. -----

가. -----
--- 벽면 이용 간판. ---

---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

-----.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
-----전
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 (생략)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생략)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제14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관리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

1. 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 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현행과 같음)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관리 등) ① -----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12조의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 후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위탁의 취소)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2조의 2에 위반할 경우

3. ~ 7. (생략)

③ ~ ⑤ (생략)

----- 심
의위원회-----
-----.

④ -----

----- 심의위원회-----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

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기간,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

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 활용할 수 없는 광고물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 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
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야 한다)

3.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
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
명서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
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
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
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
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
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옥외광고사업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
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

⑤·⑥ (현행과 같음)

<삭 제>

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 옥

외광고사업 -----

② ----- 옥외

광고사업 -----

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사람에게 -----

⑥ -----

사람에게 -----

⑦·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 -----

다.

1. 2. (생략)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
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3. 지정벽보관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내
용의 벽보로써 구청장이 인정
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관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
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
에 한한다)

--.

1. 2. (현행과 같음)

3. ----- 옥외
광고사업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 그 밖에 -----

4. -----

-- 한정한다-----

<p>5. ~ 8. (생략)</p> <p>제26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생략)</p> <p>②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u>옥외광고물정비기금</u>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5. ~ 8. (현행과 같음)</p> <p>제26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옥외광고발전기금</u> ----- ----- ----- -----.</p>
---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신옥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제5호 삭제 요청 - 제9조제4호에서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으므로 내용이 중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제9조제5호 삭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명 및 관련 내용을 현행제도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써 수반되는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 성 자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담당자 : 행정8급 정지향 2600-6400)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명 및 내용 변경(제명, 안 제1조)
- 종전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규정 변경(안 제8조제2항 제2호, 제3호)
-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 3)
- 상위 법 근거조항 변경내역 반영 및 삭제(안 제21조)
- 과태료 면제사유 규정 삭제(안 제22조제7항)
-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10호, 제13호)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문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9 - 1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도시디자인과	통보(조치)일		2019. 5. 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11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명	정지항	전화번호	02-2600-6400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최은영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04월 19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04월 25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04월 25일